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62호
- 발의자 : 이상욱 의원
- 제출일자 : 2025년 10월 17일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융합되는 디지털 전환의 필수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 및 정부 차원에서도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는 클라우드 산업의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그 외 자치법규의 체계와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문장 구성 등 기술적인 요소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시민이 자치 법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나. 중소기업 지원사항 중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지원을 규정함(안 제15조 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I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됨.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현황 및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현황

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현황 및 조례안의 발의 배경

- 클라우드컴퓨팅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구축 · 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필요한 만큼 자원을 유연하게 이용하고 사용량 기반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의미함.¹⁾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 펀테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구현과 서비스 확장에 필수 요소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 특히 국내외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AI 도입 및 고도화를 위한 기반 기술로서 클라우드컴퓨팅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에게 클라우드컴퓨팅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²⁾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5), 「2024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2) SAMSUNG SDS(2025.7.), 「2025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현황 보고서: AI시대, 클라우드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7,524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약 2조 3,901억 달러로 예상돼 연평균 약 20.4%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³⁾
-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2023년 7조 3천 9백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전년 대비 26.6% 증가하였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은 2,389개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⁴⁾
-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정부는 AI 시대에 있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5 ~ ’27)’을 수립해 국가 전반의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관련 기술과 인프라 구축 지원, 민간 주도 생태계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 중임.
- 한편 서울시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별도로 육성 ·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육성 중인 AI, 양자,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과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이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첨단산업 육성 · 지원 정책의 필수 요소로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은 여러 첨단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조례상 독립된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3) Grand View Research(2025), 「Cloud Computing Market(2025-2030)」.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5), 「2024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현황

- 2022년부터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대한 심의 ·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임.
- 동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서울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 1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당연직 4명(시장, 경제실장, 디지털 도시국장, SBA대표이사), 시의원 1명, 위촉직 15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리고 동 위원회는 2022년 9월 출범 이후 총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서울 창업 2030계획, 서울시 로봇산업 육성계획, 서울시 우주산업 육성계획 등을 심의 · 자문하였음.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분	회의개최	회의 내용	참석
1	2022. 12. 14.	· 4차 산업 관련 추진현황 보고	12명
2	2023. 06. 08.	· 서울 창업 2030 계획 중 4차 산업 관련, 서울시 로봇산업 육성 계획 심의·자문	10명
3	2024. 03. 06.	· 2024년 서울시 미래산업 전략육성 방안 등 심의·자문	12명
4	2025. 09. 26.	· 서울형R&D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우주산업 육성계획, AI 로봇쇼 개최계획 등 심의·자문	13명

- 다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은 변화가 빠른 분야로 동 위원회가 연 1회 수준으로 개최되고 있는 현행 운영 방식은 정책 조정 및 자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또한 회의 참석인원이 10~13명 수준에 불과해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률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주요 개정사항 검토

가. 총괄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과 목적 조항 등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제6조 이후 조문의 대규모 이동(번호 재배열), 위원회 관련 규정의 개편, 시행규칙 위임 조항 삭제 등 조례 후반부 체계가 사실상 재구성되는 수준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조문 번호 재배열 조항 및 신설 · 개정 조항 >

현행 조항	이동 후 조항	비고
제2조(정의)	-	- 일부개정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15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제16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 일부개정
제8조(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제17조(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제9조(혁신기술 경진대회)	제18조(혁신기술 경진대회)	
제10조(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6조(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 일부개정
제11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 일부개정 - 제11조(위원회 운영) 신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 일부개정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13조(회의록) 신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일부개정 - 제14조(존속기한) 신설
제15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 일부개정
제16조(관계기관 지정·운영)	제19조(관계기관 지정·운영)	
제17조(사무의 위탁)	제20조(사무의 위탁)	- 일부개정
제18조(적극행정의 면책)	제21조(적극행정의 면책)	
제19조(비밀보호)	제22조(비밀보호)	
제20조(표창)	제23조(표창)	
제21조(시행규칙)	-	- 삭제

- 이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정책 조정 및 의사결정 기능을 조례 체계상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별 사업과 지원 조항보다 앞부분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됨.

나. 4차 산업혁명 기술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안 제2조제5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를 신설한 것으로 “제1호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4차 산업혁명 기술”이란 제1호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한다.</p>

- 안 제2조제5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 분야 간 경계 문제나 지원 대상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현행 조례 제2조제2호는 ‘혁신기술’을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제2호마목에서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술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대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음.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혁신기술"이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난안전신기술
 -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품
 - 마.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란 기술기반의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육성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구매하거나 실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성 점검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4. "디지털 전환"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 이러한 현행 정의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의를 별도 조문으로 신설할 경우 기술 개념이 '혁신기술'과 이원화되어 중복 및 해석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경우, 정책상 우선지원 대상 기술을 특정하려는 입법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함.
- 따라서 입법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조례 체계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의 '혁신기술' 정의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지원 신설(안 제16조제1항제4호)

- 안 제16조제1항제4호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지원 내용에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 행	개 정 안
제7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 ----- ----- -----.
1. ~ 3.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지원
4. (생 략) ②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그리고 앞서 안 제2조제5호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정의를 신설하고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점을 고려하면, 안 제16조제1항제4호의 신설 역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려는 입법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조례의 「혁신기술」(제2조제2호)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첨단기술」을 포함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또한 혁신기술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또한 동 개정조례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지원은 현행 조례의 혁신기술 창업 및 기술지원(제7조),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제8조), 혁신기술 경진대회(제9조) 등을 통해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지원’이라는 새로운 지원 항목을 추가하더라도 기존의 혁신기술 지원 체계와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2조제2호의 ‘혁신기술’ 정의에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조례 체계의 정합성과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제14조)

1) 위원회 조항 재배치

-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심의 및 자문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 구성 및 임기, 분과위원회의 설치, 회의 소집 및 의결절차,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조항이 대폭 정비되고 세분화되었음.
- 특히 현행 조례에서 후반부에 위치했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 체계상 전반부로 이동시켜 개별 사업 지원 조항보다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기능을 우선 제시하는 체계로 재구성하고 있는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공식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하려는 입법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강조하려는 입법취지는 인정되나 위원회 조항이 반드시 앞부분에 위치해야 한다는 입법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과 같이 사업 조항 이후에 규정하더라도 조례 운영과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조문 이동은 개정의 실익에 비해 조례 체계의 혼선과 해석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조문 순서 변경보다는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의 정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위원장 선출방식의 변경(안 제7조제2항)

- 안 제7조제2항은 위원장 선출 방식을 현행 ‘위원들 중에서 호선’ 방식에서 ‘시장 임명 · 위촉’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u>제11조(위원회 구성)</u>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p>	<p><u>제7조(위원회 구성)</u>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 현재 동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각각 맡고 있어 행정기관의 장과民間 전문가의 균형적 역할 분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공동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위원장 모두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 특히 두 명의 공동위원장 모두 시장이 임명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조정 기능이 행정기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위원회의 역할이 정책 심의 · 자문기구가 아닌 행정 보조기구적 성격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위원장 모두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위원의 임기(안 제8조제2항)

- 안 제8조제2항은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방식에서 새로 위촉된 시점부터 2년의 임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p> <p>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u>위촉된</u> 위원의 임기는 <u>전임위원</u> 임기의 남은 <u>기간으로</u>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위촉한</u> ----- ----- <u>새로이 시작한다.</u> ----- ----- -----.</p> <p>③ (현행과 같음)</p>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 잔여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위원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어 입법기술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기 위원회, 2025년부터 2기 위원회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어 보궐위원에게 2년의 임기를 부여할 경우 위원회 기수제 운영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특히 기수별 운영체계에서는 회의 운영, 임기 만료 시점 조정, 위원 구성 재정비 등의 절차가 중요하므로, 보궐위원의 임기가 별도로 분리될 경우 위원 구성 조정 및 운영관리 측면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보궐위원에게 임기 2년을 새롭게 부여하는 방식이 동 위원회의 운영 특성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위원회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동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문 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위원회 설치시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동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것은 상위법 및 조례에서 요구하는 존속기한 명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마. 시행규칙 조항의 삭제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1조의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u><삭 제></u>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29조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 권한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같은 포괄 위임 조항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⁶⁾
- 이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조례 제21조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규정은 아닌바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입법기술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의 제정이나 전부개정시 새로운 조문으로서 시행규칙 조항을

5)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 법제처 의견제시(23-0367); 법제처(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6.

미신설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굳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행규칙 조항을 개정하면서까지 삭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입법조사관	연락처
신현두	2180-8055